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20. 8. 26.

행정재무위원회  
전문위원 조남문

**1. 제안자:** 성동구청장

## 2. 제안이유

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대상(안 제2조부터 제4조)
- 나.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(안 제5조부터 제7조)
- 다.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와 운영(안 제8조부터 제13조)
- 라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14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## 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7. 9. ~ 7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,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15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-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

-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시하였으며,

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

- 필수업종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,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

-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운영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,

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

- 중앙행정기관, 타 지자체,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-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전환이나 휴업이 가능한 업무도 있는 반면, 의료·돌봄·안전·운송 등은 위기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해당 노동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- 이에, 본 제정안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재난발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, 선언적·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, 재난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달리할 수 있어 조례상 필수업종의 범위, 필수노동자 지원내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,
- 필수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,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< 관련법규 >

### 붙임 1

###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